

시(도)지회 운영 규정

제정 2009.03.06.

개정 2020.12.09.

제1장 총칙

제1조 (근거 및 목적) 본 규정은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(이하 “본 연맹”이라 칭한다) 정관 제10장에 의거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주소)

- ① 각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는 본 연맹 시(도)지회로써 지역을 통합 할 수 있는 용어로 ○○도(시)장애인e스포츠연맹으로 정하고, 영문 명칭도 정해야 하고 사무소는 각 시(도)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‘20.12.09’>

제2장 권리와 의무

제3조 (권리) 각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총회에 대의원 자격을 갖고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(단, 회장, 부회장까지 자격을 갖는다)
2.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3. 본 연맹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4. 본 연맹이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

제4조 (의무) 각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시(도)지회는 지회와 시(도)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당해단체의 지회 및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본 연맹 정관 제37조에 의거 설치할 수 있는 분쟁조정 특별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당해 단체 정관 (또는 규정)에 규정하여야 한다.
2. 사업계획서, 예산서 및 사업보고서, 결산서를 당해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3. 본 연맹 정관 및 동 규정에 준하여 규약을 제정하여 본 연맹에 보고하고, 이의 개·수정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4. 임원의 선임 및 개선이 있을 때마다 이를 본 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(시(도)지회 지도육성)

- ① 본 연맹은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.
- ② 본 연맹은 시(도)지회가 본 연맹 정관, 규정 등의 위반, 가맹단체장의 결원, 임원간의 분쟁, 재정악화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,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(도)지회에 대해 본 연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.
- ④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가맹·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
- ⑤ 시(도)지회로서 의무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6조 (가맹 및 탈퇴)

- ① 각 시(도)지회의 가맹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.
<개정 '20.12.09>
- ② 가맹 및 탈퇴에 관하여 본 연맹 가맹·탈퇴 규정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3장 임 원

제7조 (임원)

- ① 대의원총회와 이사회의 구성 및 성격은 본 연맹 정관에 규정한 바에 각 각 준한다.
- ② 집행부의 선임 임원 수는 각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의 실정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다.

제8조 (선임임원)

- ① 임원의 선임, 보선 및 임기는 본 연맹 정관에 규정된 바에 각 각 준한다.
- ②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부 선임임원 수의 3/10 이상은 장애인

선수출신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당연직이사의 수는 그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- ③ 회장, 부회장은 집행부의 당연직 이사이다.
- ④ 동일인이 유관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⑤ 선임임원 중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취임은 본 연맹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.

제4장 자산 및 회계

제9조 (자산의 구분)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다.

- 1. 소유동산 및 부동산
- 2. 기금
- 3. 회비
- 4. 본 연맹 지원금
- 5.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
- 6. 사업 수익금
- 7. 기부금 및 찬조금
- 8. 기타 수입금

제10조 (예산편성 및 결산)

- ① 사업계획 및 세입·세출 예산안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,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를 결의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 (기금 및 적립금)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로 한다.

제12조 (회계연도) 회계연도는 본 연맹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.

제13조 (회계감사)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의 업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.

제5장 사무국

제14조 (사무국)

- ①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시(도)지회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, 시(도)지회는 가능한 선수출신 1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며,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시(도)지회 사무를 관장한다.
- ③ 이사는 회장의 지회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관장하며, 직원의 임명은 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, 특별한 사유 없이는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15조 (직제 및 규정)

- ① 사무국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서 이를 따로 정한다.
- ② 사무국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,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.

제6장 보 칙

제16조 (준용) 시(도)지회 규약과 상이한 경우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 연맹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본 연맹에서 별도 지시한다.

제17조 (제한사항) 본 규정 및 정관 등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연맹은 제3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본 연맹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